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내용

임 호 철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서기관

I. 머 리 말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며, 가치상으로는 기 능상으로는 지방 행 · 재정의 운용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지방행 · 재정 운용상의 물적 수단인 공유재 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이다. 지방 행 ·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확보하려면 이를 공정하 고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만 한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의 지방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위주에서 유 · 무체 재산을 통합한 ‘종합자산관리’ 체계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권리보존’ 중심에서 ‘수익성 제고’ 중심으 로, ‘현상유지관리’ 위주에서 ‘운용효율성 극대화’ 지향으로 재산관리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 건물 등 공유재산은 총 156조원 수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나, 그동안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노력이 저조했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비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주민들의 불편요인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해석상 논 란이 있는 조항이 다수 있어 기관간, 민원인간 이견사례가 빈번하였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법규정이 지방재정법 내 에 분산 나열되어 있어 복잡하고 이해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분권화 · 자율화 취 지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독립된 법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의 체계적·독자적 발전 전기를 마련하게되었다.

II.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정의 의의

참여정부는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선정하여 재정혁신을 추진중인데 이러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로 위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한 책임성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도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의 일대 혁신을 요하는 사항인 만큼 법령 제정안 마련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추진 하였다.

첫째, 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담당자 연찬회, 국·내외사례 등 관련자료 수집, 공유재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

둘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은 단순히 지방재정법에 속한 사항을 분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비추어 국유재산법과 달리 적용되는 특성을 법안에 규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법률 문안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바꾸었다.

위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 지방의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주민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가산금의 폐지등 주민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공유재산에 지역특화 시설유치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절약·보존위주의 관리방식에서 효율극대화를 위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국유재산법 체계를 기본골격으로 하되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법령체계 구성 및 제도개선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내용을 한곳에 정리하는 등 단순명료하게 법안을 정비하여 수요자의 이해편의를 제고하였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은 단순히 분법하는 것이 아닌만큼 수시로 담당자들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하여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04. 8월까지 행정자치부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04. 9월까지 공식적인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 '04. 10월 법제처 심의 및

당정협의 등 제반절차를 걸쳐 차관회의('04.11.18)와 국무회의('04.11.23)를 통과한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2004년12월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2005년 6월 행자위 및 법사위의 법안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05.6.29)되어 2005년8월4일 공포 됨으로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정이라는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Ⅲ.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정 주요내용

법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문 이외에 제도개선 되어 새롭게 도입된 내용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법으로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유재산의 범위 및 구분

공유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그 구분과 종류에 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재산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수익허가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국유재산과 형평을 기하고 위 기간을 단기로 함으로써 당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와 목적 등에도 부합될 것이다.

행정재산및보존재산의 위탁관리시 재산이용료와 위탁보조금의 상계허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와 별도로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용료징수절차가 복잡하며, 위탁을 받은 자의 노력으로 당해 재산의 이용도가 제고되어도 이용료 수입 증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계처리를 허용 하는 것이다.

재산이용료와 위탁보조금의 상계처리를 허용함으로써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사용할 수 있어 징수절차가 간소하여지고, 이용료의 수입증대시 그 증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함으로써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관리에 대한 정보공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정보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물품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상호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적인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공유재산의 매각·대부 및 소송업무 등 공유재산 담당부서의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당해 업무담당자의 교체가 빈번하고 이에 따라 그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재산 등의 파손에 대한 가산금 폐지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가 관리소홀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한 경우 사용료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이중부담이 되며, 손해보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였다.

국고보조 공공시설 설치조례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폐지

설치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받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를 지방의회 의결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었으나 지방분권 시대

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자율권이 확대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특별재물조사 폐지

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 특별재물조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할 수도 있어 자치권의 침해소지가 되었던 것을 자치단체가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물조사 보다는 통상의 감사 기능을 통해 감독기능을 수행함이 바람직 하기에 폐지하여 자율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였다.

IV. 향후 발전과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 온 길만큼이나 나아갈 길이 만만치 않다 할 것이다.

수요자 위주의 법령제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국회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의결로 확인된 만큼 자치단체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히 제정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독립된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개선이 훨씬 쉬워질 것이며, 기존의 시행령에 비하여 알기 쉽게 쓰여진 만큼 초보자 및 일반인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나 조항 등은 어디까지나 도달해야할 최소한 수준이나 주요사항만 담고 있을 뿐으로 공유재산및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번에 제정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성공여부는 제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용하는 행정의 운용의 미를 지키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동반자적 관계로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주민전체를 위해 사용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